

코로나-19 발생으로 인한 원산지증명서(CO) 특별조치

No	원산지규정 관련 조치	인정/허용 국가
1	CO (스캔)사본	<p>한-아세안 FTA</p> <p>싱가포르: 인정</p> <p>인도네시아: 수입신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제출되는 CO 의 컬러 (스캔)복사본을 인정한다. 수입자는 수입일로부터 90 일부터 늦어도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 년이내에 원본 CO 를 제출해야 한다.</p> <p>라오스, 태국: CO 의 (스캔)복사본을 인정. 원본 CO 는 반드시 물품의 통관일 이후 30 일 이내에 세관에 제출되어야 한다. 본 규정은 라오스에서는 2021 년 연말까지, 태국에서는 2022 년 9 월 30 일까지 효력을 유지한다. 라오스: CO 의 진위를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수출 당국으로부터 제공된다.</p> <p>말레이시아: 인정. 원본 CO 는 자국 봉쇄조치가 해제된 후 14 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. 단, PH 로부터의 CO 는 봉쇄조치 해제 후 30 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.</p> <p>캄보디아: 인정. 원본 CO 는 ATIGA 와 아세안+1 FTA 의 경우 45 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. CO 의 진위를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수출 당국으로부터 제공되어야 한다.</p> <p>미얀마: CO 를 포함한 상업서류의 컬러(스캔)사본 인정. 그러한 서류는 이메일로 전송가능하다. 그러나 원본 CO 는 물품이 반출된 후 한 달 이내 또는 국내행 항공편이 재개된 후 세관에 제출되어야 한다. 본 규정은 2021 년 9 월 30 일까지 유효하며 한 달 연장이 가능하다.</p> <p>베트남: 국내 세관이 발급당국의 웹사이트/시스템 또는 기타 방법으로 CO 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면 (사본)인정.</p> <p>브루나이: 인정. 다만 원본 CO 가 30 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.</p> <p>필리핀: 한-아세안 FTA C/O 의 스캔 사본을 인정. 단, 수입 후 30 일 이내 원본을 보완 제출해야 함. 이러한 유연한 조치는 이동 제한 조치가 시행되는 동안에 시행될 것이다.</p> <p>한국: 별도 조건 없이 인정.</p>